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번 호	제일 925110301호
건 명	정일형소유물건(2025타경503628)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제일감정평가법인
THE FIRST APPRAISAL & CONSULTING CO.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44(두정동 필레오빌딩5층)
지사 TEL : (041)553-7171 FAX : (041)553-7174

925110301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강대용 (인)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장 김 석 필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이십사억칠천삼백만원(₩2,473,000,000.-)			
평가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오충렬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 출 처	대전지방법원 경매10계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정일형	기 준 가 치	시 장 가 치	
		감정평가조건	-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2025타경503628 부동산임의경매)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자
		2025. 11. 11	2025. 11. 10~ 2025. 11. 11	2025. 11. 11

감정평가내용	공부 (公簿) (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3개호	건물	3개호	-	2,473,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2,473,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유 홍 우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소재 '금암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3개호로서, 대전지방법원의 경매[2025타경503628,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정일형]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감정평가 대상물건

1) 대상물건 개요

(1) 건물 개요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341-1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길 110-20)			
건물 명칭				
건물 개황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277	514.03	39.57	100.38
	주구조	주용도	층수	사용승인일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지상2	2014.07.31

※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 대상물건

일련번호	동	층	호	용도	전유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전용률(%)	대지권(㎡)
1	-	지하1	B01	일반음식점	216.65	19.34	235.99	91.80	92.4
2	-	1	101	일반음식점	144.48	19.34	163.82	88.19	92.3
3	-	2	201	일반음식점	94.88	19.34	114.22	83.06	92.3

※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1월 11일임.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2025년 11월 10일 ~ 2025년 11월 11일에 수행하였으며, 대상물건의 위치, 구조 및 이용상황 등을 조사·확인하였음.

6.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기타 참고사항

① 대상물건의 면적, 구조 및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공부와 현황이 대체로 일치하는바 물적 동일성은 인정됨.

② 대상물건의 호별 위치 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건축물현황도” 및 전유부 “현황도면” 등에 의거함.

③ 대상물건 일련번호(1~3)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과 일반건축물대장 면적이 상이하여 물적 사항의 기준인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사정·표기 하였으며, 그에 따른 면적에 대한 대지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면적으로 기재하였으니 추후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④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면 구분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하여 일반적으로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별도 평가는 곤란하나, 본 평가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여 별지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에 표기함.

II.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 관련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대상물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는 수행하지 아니함.

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거래사례 단가 (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	대상물건 평가단가 (원/㎡)

2. 비교사례의 선정

1)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동/층/호	이용상황	전유면적 (㎡)	대지권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도계리 2**-*	주*/ 1/1**	일반음식점	96.72	161.26	772,994,114	7,992,081	2025.08.07 2017.01.13
#2	도계리 2**-*	주*/ 1/1**	일반음식점	96.72	161.26	772,994,114	7,992,081	2025.08.07 2017.01.13
#3	도계리 2**-*	주*/ 2/2**	일반음식점	145.08	241.89	705,479,412	4,862,692	2025.08.07 2017.01.13

※ 거래단가 = 거래금액 / 전유면적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비교사례 선정

상기 가격조사자료 중 대상물건을 평가함에 있어 보다 적절한 사례로 판단되는 「**거래사례 #1**」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기호	소재지	동/층/호	이용상황	전유면적 (㎡)	대지권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도계리 2**-*	주*/ 1/1**	일반음식점	96.72	161.26	772,994,114	7,992,081	2025.08.07 2017.01.13

3. 사정보정

특별한 사정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1.00)

4. 시점수정

구분	비교사례	적 용 지 역 (산 정 기 간)	시점수정치	비고
집합상가	#1	세종 (2025.08.07~2025.11.11)	-1.062% (0.98938)	2025년 03분기 : -1.01 2025년 04분기 : -1.01 (2025년 03분기 자료) (1-0.0101*55 ÷ 92)*(1-0.0101*42 ÷ 92) ≒ 0.98938

※ 출처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상권별 자본수익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1) 일반요인

의견	대상물건과 비교사례는 동일 사회·경제권역에 속하므로 상호 대등함.
일반요인 비교치	1.000

2) 지역요인

의견	대상물건과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상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개별요인

[대상물건 일련번호(1) /비교사례 기호(#1)]

조건	세부항목	검토의견	격차율
외부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열등함.	0.75
	도심지 및 상업 ·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등)		
건물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상호 대등함.	1.00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호별요인	층별 효용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위치별 효용(금강조망) 등에서 우등하나, 층별 효용 등에서 열등함.	0.77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호 대등함.	1.00
개별요인 비교치			**0.57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대상물건 일련번호(2) /비교사례 기호(#1)]

조건	세부항목	검토의견	격차율
외부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열등함.	0.75
	도심지 및 상업 ·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등)		
건물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상호 대등함.	1.00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호별요인	층별 효용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위치별 효용(금강조망) 등에서 우등함.	1.10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호 대등함.	1.00
개별요인 비교치			**0.82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대상물건 일련번호(3) /비교사례 기호(#1)]

조건	세부항목	검토의견	격차율
외부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열등함.	0.75
	도심지 및 상업 ·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등)		
건물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상호 대등함.	1.00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호별요인	층별 효용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위치별 효용(금강조망) 등에서 우등하나, 층별 효용 등에서 열등함.	0.96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호 대등함.	1.00
개별요인 비교치			**0.7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일련번호	비교사례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
1	#1	1.000	1.000	0.578	0.578
2	#1	1.000	1.000	0.825	0.825
3	#1	1.000	1.000	0.720	0.720

6. 구분건물 산출단가 결정

일련번호	비교사례 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산출단가(원/㎡)
1	7,992,081	1.000	0.98938	0.578	4,570,365
2	7,992,081	1.000	0.98938	0.825	6,523,444
3	7,992,081	1.000	0.98938	0.720	5,693,18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분석

1) 인근지역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동/층/호	이용상황	전유면적 (㎡)	평가 목적	평가금액 (원)	평가단가 (원/㎡)	기준시점 / 사용승인일
(1)	금암리 3**-*	1/2/2**	일반음식점	187.05	담보	700,000,000	3,742,314	2024.11.28 / 2014.12.18
(2)	금암리 3**-*	1/1/1**	일반음식점	187.05	담보	1,200,000,000	6,415,396	2024.11.28 / 2014.12.18

※ 평가단가 = 평가금액 / 전유면적

※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번호	동	층	호	전유면적(㎡)	산출단가(원/㎡)	산출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	지하1	B01	216.65	4,570,364	990,169,360.6	990,000,000
2	-	1	101	144.48	6,523,444	942,507,189.12	943,000,000
3	-	2	201	94.88	5,693,187	540,169,582.56	540,000,000
합 계				456.01	-	-	2,473,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Ⅳ.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일련번호	동	층	호	전유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1	-	지하1	B01	216.65	990,000,000	-
2	-	1	101	144.48	943,000,000	-
3	-	2	201	94.88	540,000,000	-
합 계				-	2,473,000,000	-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평가대상 구분건물의 주위환경, 층별·위치별 효용과 인근 유사 구분건물의 정상적인 거래시세,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경매통계 낙찰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부동산 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기준시점 : 2025-11-1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적(㎡) 공부	면적(㎡) 사정	감정평가액	비고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길 110-20	341-1 제1동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지하1층 1층 2층	 102.42 102.42 102.42			표제부 중복기재생략 일반건축물 대장 기준
(1)	동소	341-1	대	계획관리지역	277			
1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지하층 제비01호 소유권 (1).----- 대지권	216.65 92.4 (1).----- 277	216.65 92.4 **배분내역** **토지가격** **건물가격**	990,000,000 **495,000,000** **495,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19.34㎡]
2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층 제101호 소유권 (1).----- 대지권	144.48 92.3 (1).----- 277	144.48 92.3 **배분내역** **토지가격** **건물가격**	943,000,000 **282,900,000** **660,1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19.34㎡]
3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1호 소유권 (1).----- 대지권	94.88 92.3 (1).----- 277	94.88 92.3	540,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19.34㎡]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기준시점 : 2025-11-1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적(㎡)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배분내역		
						토지가격	**216,000,000**	
						건물가격	**324,000,000**	
	합 계						**₩2,473,000,000**	**.-**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이 용 상 태	7. 인접 도로상태등	9. 공부와의 차이
2. 교 통 상 황	5. 설 비 내 역	8. 토지이용계획	10. 기타참고사항
3. 건물의 구조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및 제한상태	(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소재 '금암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단지 및 전,답 등의 농경지와 로변으로 소규모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징크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1): '일반음식점(상호명: D.GREEN CAFE)' 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일반음식점(상호명: BLUESTONE)' 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일반음식점(상호명: 풍류다방)' 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평지로서, '대(상업용 건부지)' 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북측으로 왕복4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이 용 상 태	7. 인접 도로상태등	9. 공부와의 차이
2. 교 통 상 황	5. 설 비 내 역	8. 토지이용계획	10. 기타참고사항
3. 건물의 구조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및 제한상태	(임대관계 및 기타)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위 치 도

N
W E
S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3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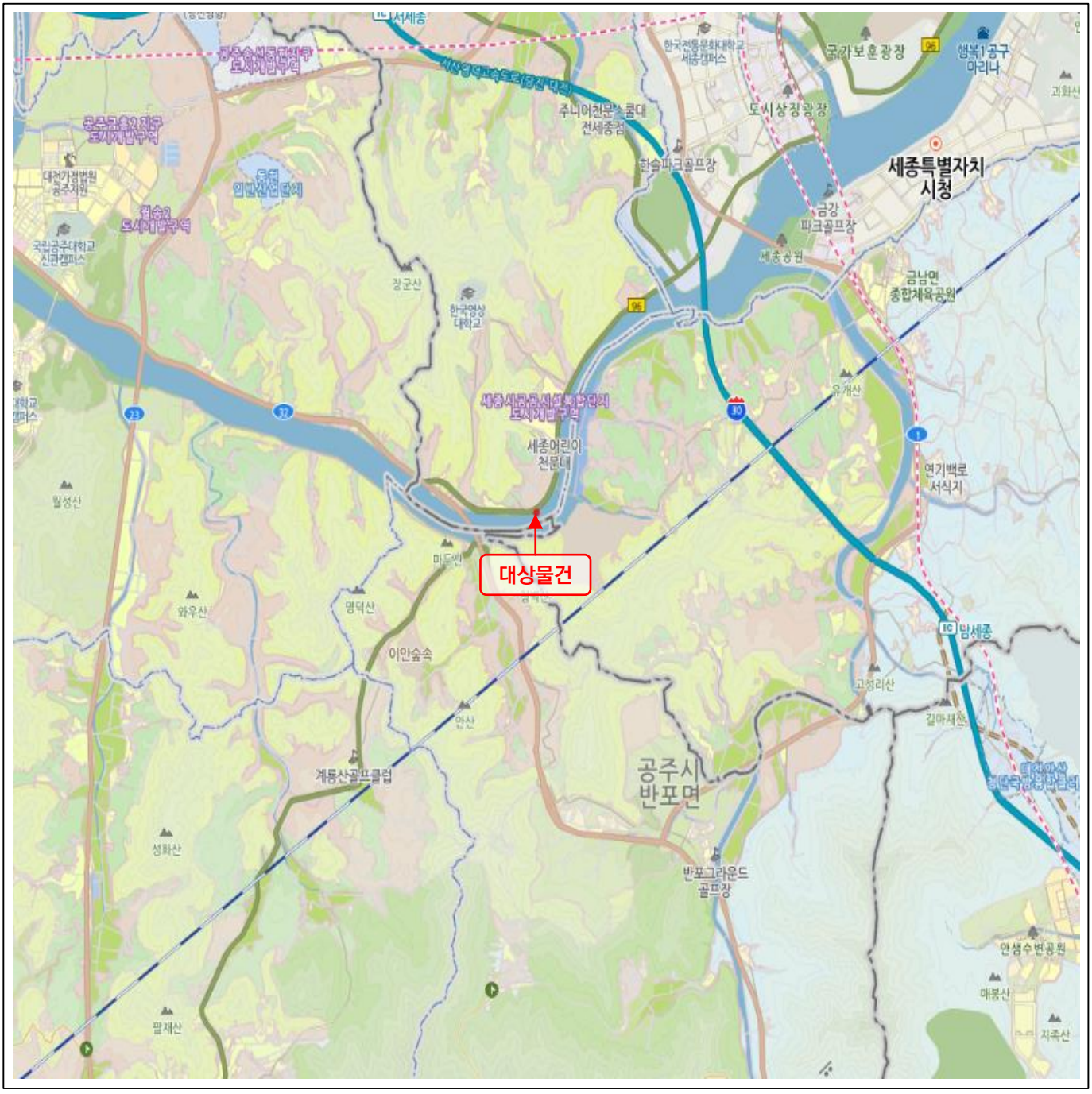

위 치 도

N
W E
S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341-1

건물이용 및 임대상황

호 별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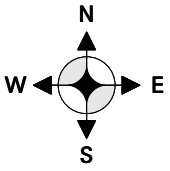

S :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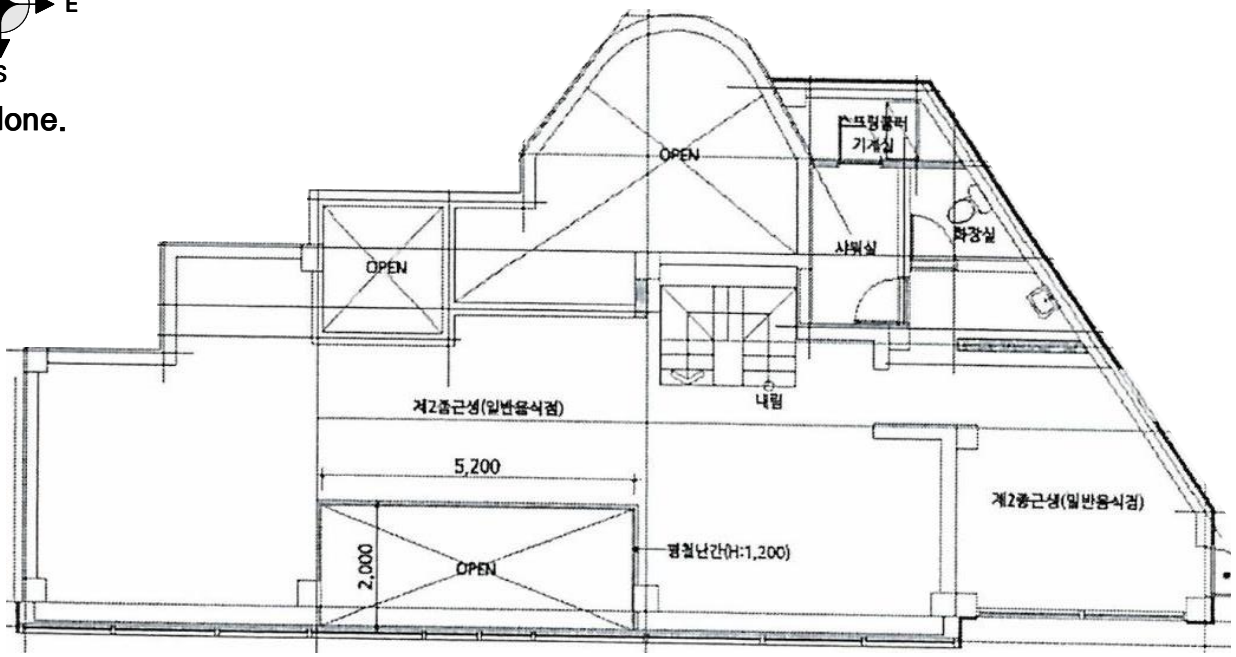

[일련번호(1) : 제지1층 제B01호(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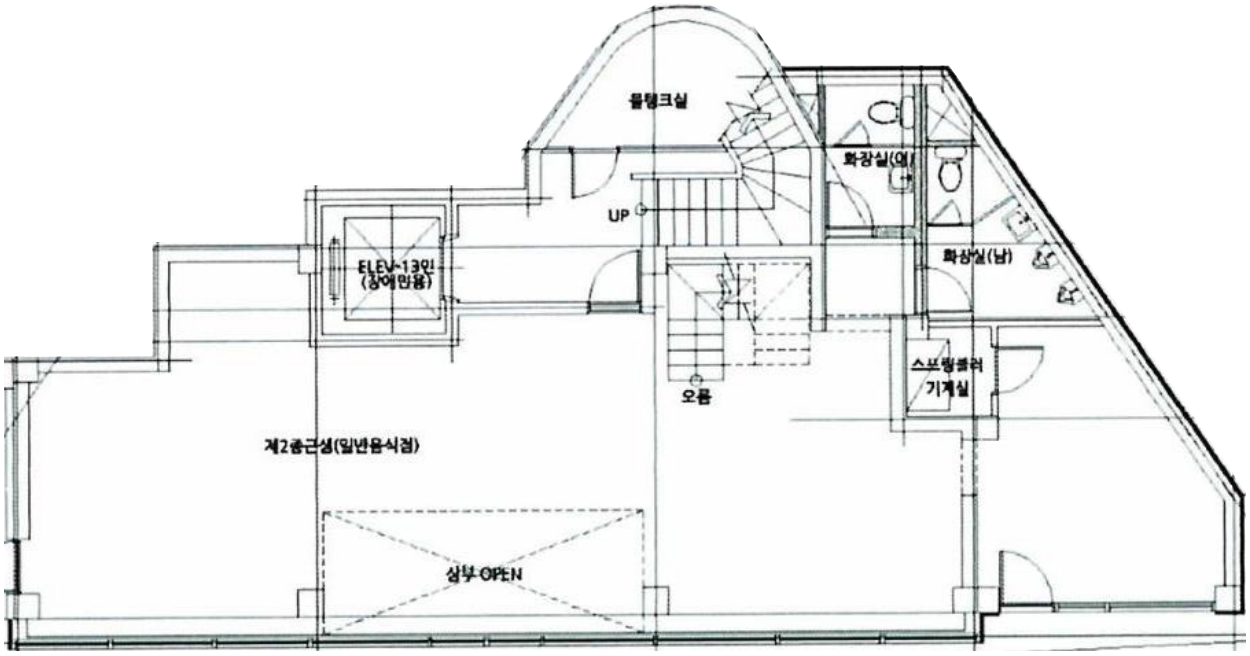

[일련번호(1) : 제지1층 제B01호(하층)]

건물이용 및 임대상황

N
W E
S

S : None.

호 별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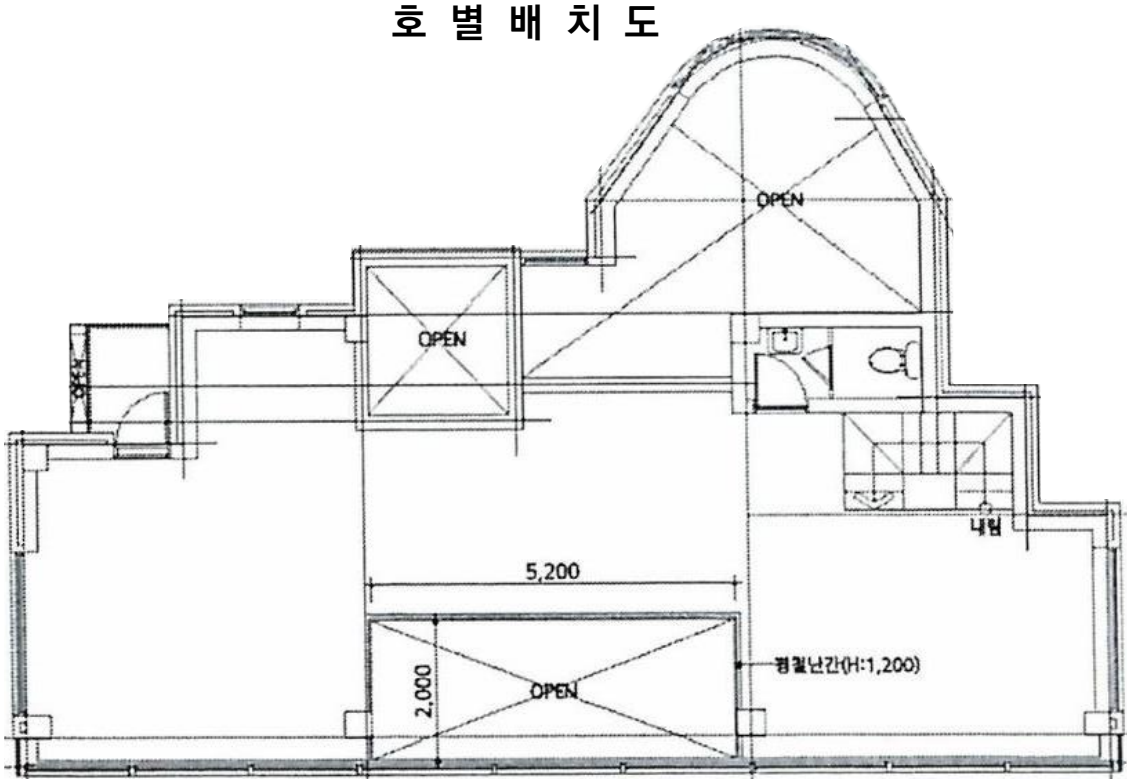

[일련번호(2) : 제1층 제101호(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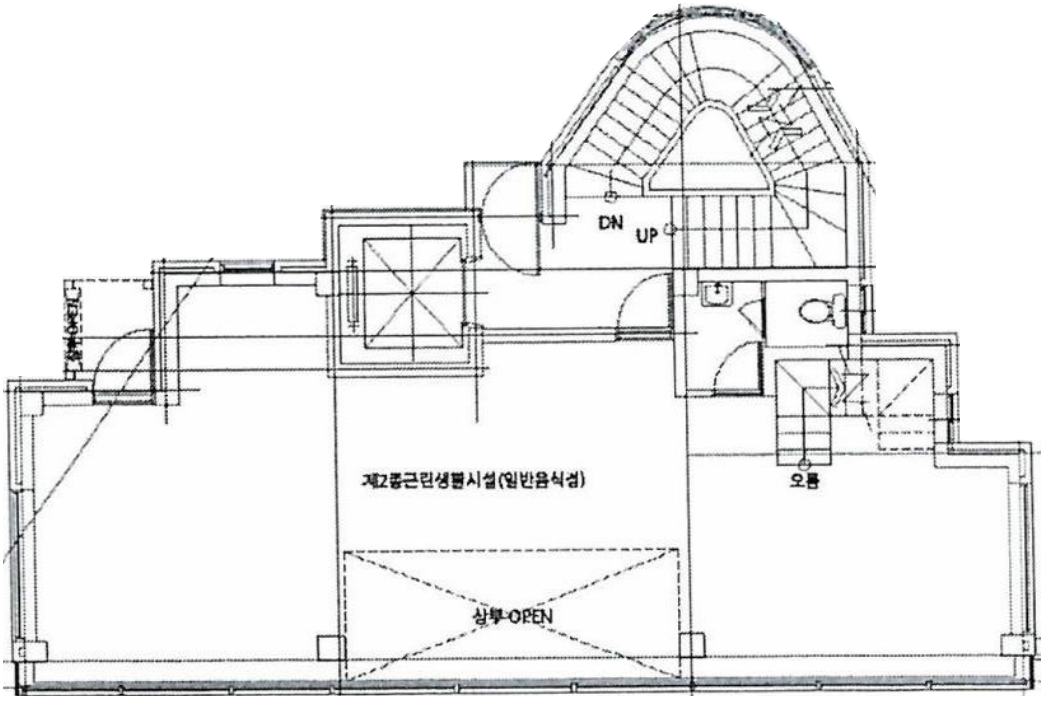

[일련번호(2) : 제1층 제101호(하층)]

건물이용 및 임대상황

호 별 배 치 도

N
W E
S

S :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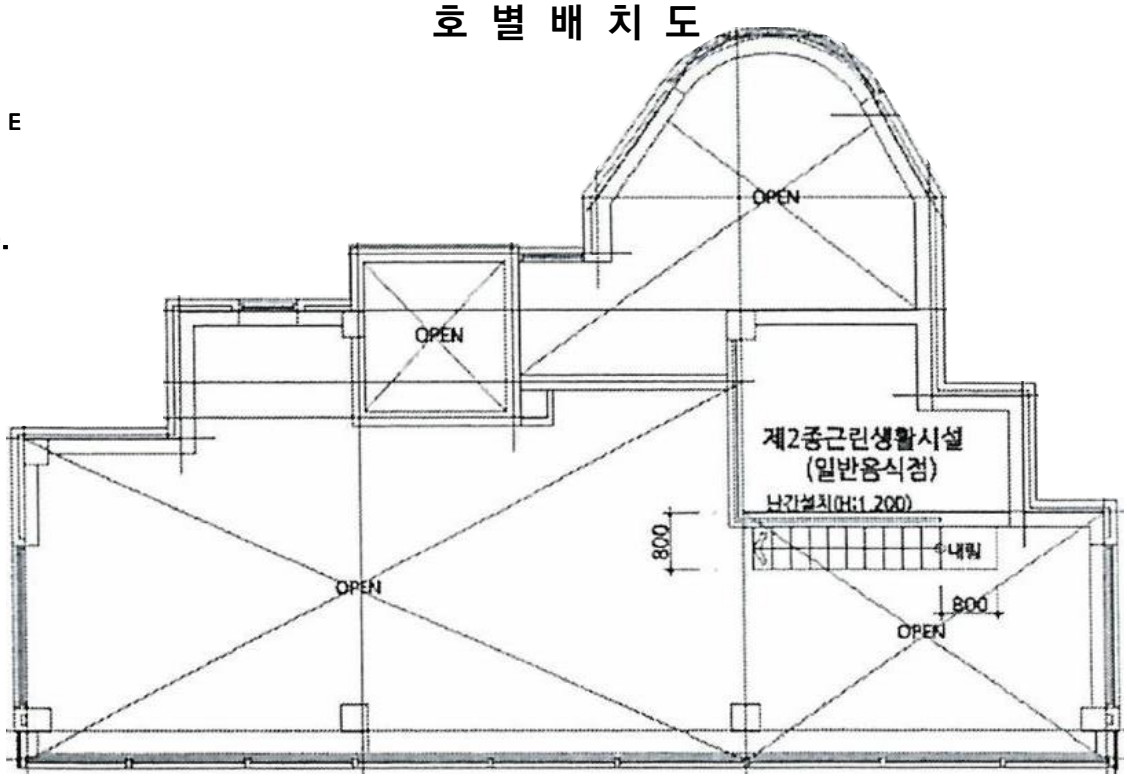

[일련번호(3) : 제2층 제201호(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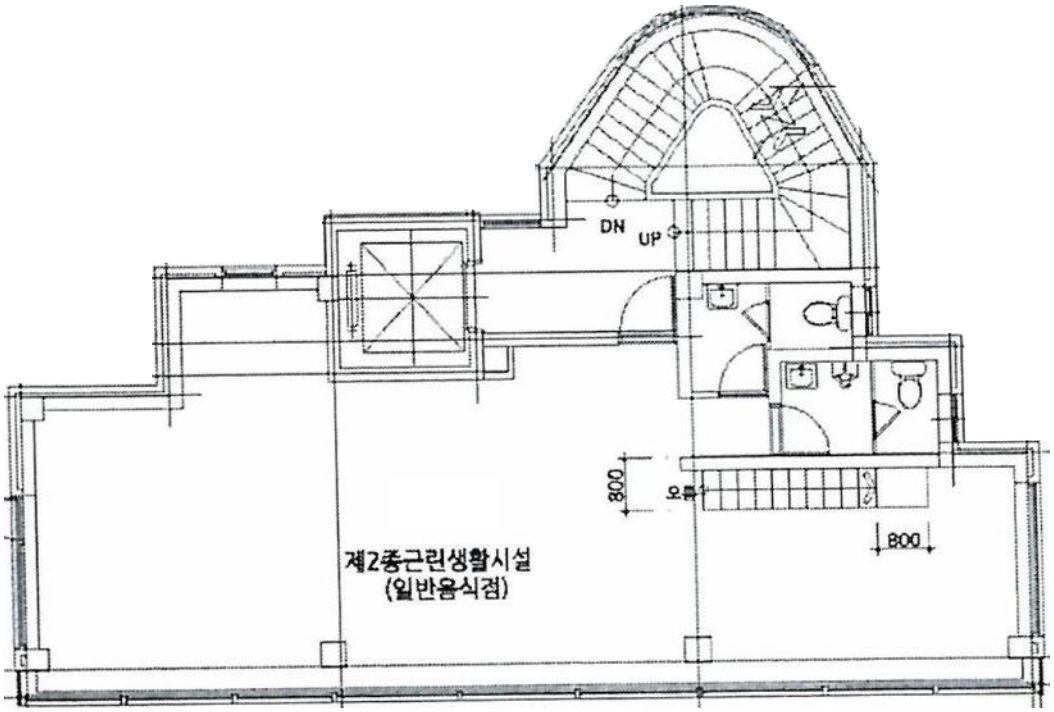

[일련번호(3) : 제2층 제201호(하층)]

사 진 용 지

【 대상물건 전경 】

【 대상물건 전경 】

사 진 용 지

【 대상물건 주위환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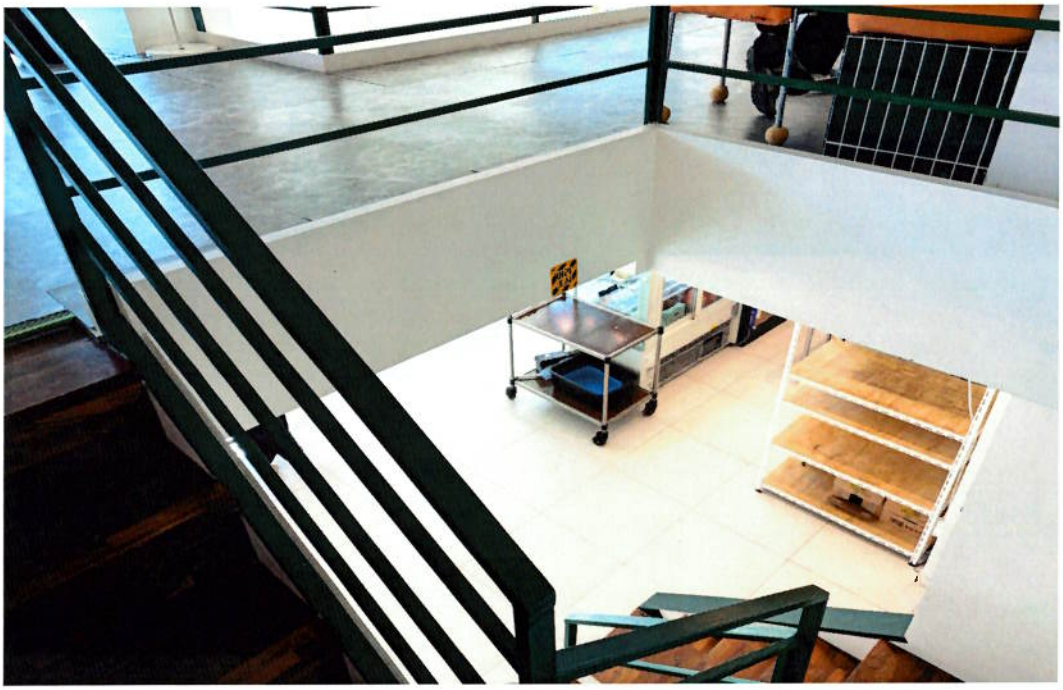

【 대상물건 일련번호(1) : 지하층 비01호 】

사 진 용 지

【 대상물건 일련번호(2) : 101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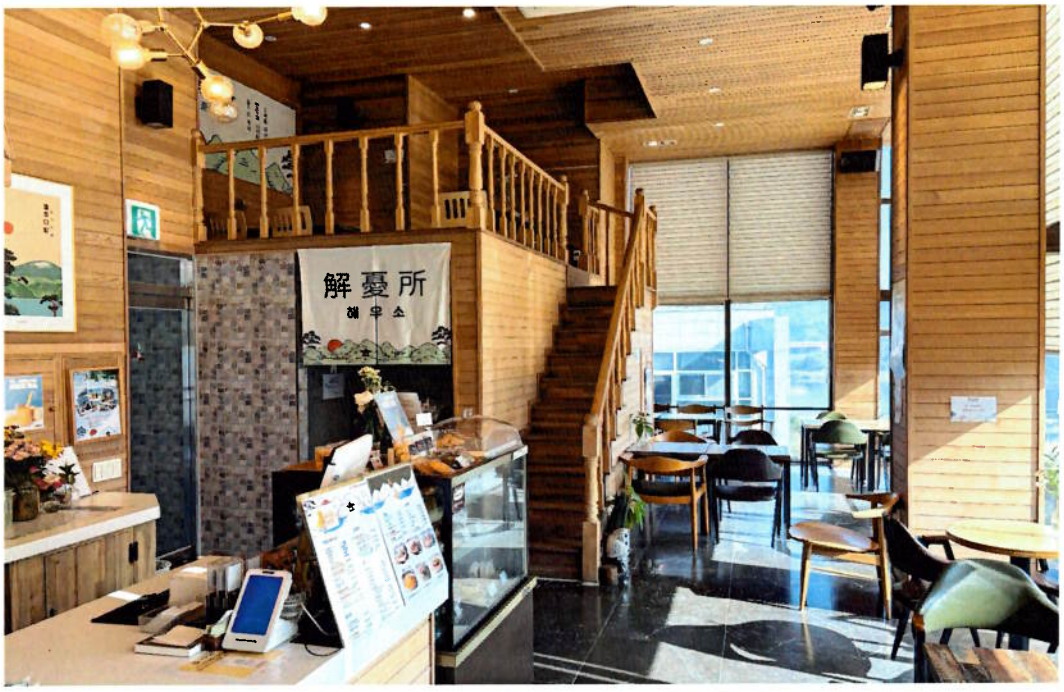

【 대상물건 일련번호(3) : 201호 】

수 수 료 청 구 서

감정평가서번호 : 제일 925110301호

대전지방법원 경매10계 귀하

一金이백삼십팔만이천육백원整 (₩2,382,600.-)

1. 2025.11.03자로 의뢰하신『정일형소유물건(2025타경503628)』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 구 내 역 -

과 목	금 액	비 고
가. 평가수수료	1,898,720	
나. 여 비	242,4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3,600	
기타 실비	12,000	
특별용역비	-	
소 계	268,000	
합 계	2,166,000	
부 가 가 치 세	216,600	
총 계	2,382,6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구액	₩2,382,600.-	

※ 위 금액을 아래 구좌로 송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 (925110301)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합계액에서 천원 미만 절사하였습니다.

★ 계 좌 번 호 ★

하나,천안(충남지사) 604-009473-00104 예금주: (주)제일감정충남지사

(주) 제 일 감 정 평 가 법 인

충남지사장 김 석 필

(TEL : 041-553-7171 FAX : 041-553-7174)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312-85-23183]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서

감정평가서번호 : 제일 925110301호

대전지방법원 경매10계 귀하

一金이백삼십팔만이천육백원整 (₩2,382,600.-)

수수료산정기초가액 (감정평가액)	1.0배분 기초가액	1.5배분 기초가액	영업보상평가액	총 액
	2,473,000,000			2,473,000,000

기초수수료 계산 평가액	총수수료산정기초가액 - 영업권보상평가액	2,473,000,000

기초수수료	기초가액(평가가액)	적용가액	수수료율	적용요율	산정금액
	5천만원까지	50,000,000			250,000
	5천만원초과 5억원까지	450,000,000	X 1만분의11	1	495,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00,000,000	X 1만분의 9	1	450,000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1,473,000,000	X 1만분의 8	1	1,178,400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500억원초과 1000억원까지				
	1000억원초과3000억원까지				
	3000억원초과6000억원까지				
	6000억원초과 1조원까지				
	1조원초과				
	계	2,473,000,000		0.8	1,898,720

1. 평가수수료	1.0배	(1,195,000 + 1,473,000,000x(8/10,000)) x 0.8 ≒1,898,720	1,898,720
	1.5배		
	영업보상		
	소 계		1,898,720
2. 실 비	여 비		242,400
	물건조사비	1동 x 10,000원	10,000
	기 타		15,600
	소 계		268,000
합 계		1. 평가수수료 + 2. 실비 (※ 천원미만 절사)	2,166,000
부가가치세			216,600
총 계		합 계 + 부가가치세	₩2,382,600

(주) 제 일 감 정 평 가 법 인

충남지사장 김 석 필